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3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8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박성훈 · 김승수
김형동 · 박충권 · 이인선
서명옥 · 강명구 · 안철수
김소희 · 이만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,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, 인구 고령화,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,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.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,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,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,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.

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, 빈 점포를 디지털 · 세대협업 · 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

함(안 제13조제3항제6호,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
제16조제1항제1호 중 “임대료”를 “임대료·관리비·공과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·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
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청년상인과 고령상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업 및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세대 통합형 점포 운영 장소

5의2. 온라인 판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 점포 운영 장소

7. 지역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·판매를 위한 장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) ①·② (생략)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6. (생략) ④ (생략)	제13조(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·육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 조성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창업에 따른 <u>임대료</u> 및 점포 개선 지원 2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임대료·관리비·공과금</u> 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청년상인의 공동 마케팅·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</u>

5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 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 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7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17조(빈 점포의 활용 촉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청년상인과 고령상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업 및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세 대 통합형 점포 운영 장소</u> 5. (현행과 같음) 5의2. <u>온라인 판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기반 점포 운 영 장소</u>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지역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 조합의 제품 홍보 및 전시 · 판매를 위한 장소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